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69

2087년 2월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2월 9일, 김광수(도봉)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2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광수(도봉)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이 이용하는 공원을 점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공원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통해 부과하고 있으나, 관람권을 발매하는 유료 행사에 대한 명확한 이용료 징수 규정이 없음.

○ 이에 사익을 추구하는 유료행사의 경우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2〕 이용료 규정에 유료행사 관련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

○ 이용료는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15%를 부과하도록 하며, 공간을 점용한 점용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공원의 입장료(제40조)와 점용료(제41조)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동 개정안은 공원에서 입장권(티켓)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행사도 일반 공원이용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현실적인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공원시설 이용절차와 이용료

○ 3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기별로 각 사업소에서 접수를 받고 장소사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별된 행사에 한해 이용을 허가하고 있음.

○ 공원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별표 2〕의 규정에 의해 해당 행사와 시설, 그리고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이용료 부과기준에 의해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이용료는 점용면적 1㎡당 10~20원의 금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 단체나 기관에서는 공원 이용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하여야 함.

2) 유료행사 개최 현황

○ 최근 3년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산하 시관리공원에서의 유료행사는

58건으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53건 개최되었음.

○ 행사의 대부분은 참가비를 내고 진행하는 마라톤 대회로, 주최측에서는 기업 홍보용 기념품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로 진행하며, 행사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2017년 1월 서울숲에서 개최한 재즈 페스티벌의 경우 5천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티켓가격이 4만8천원 이었으므로 티켓판매액은 2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공원 점용료는 297만원에 불과하여 티켓을 발행하는 유료행사의 경우 적정한 점용료와 이용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3) 유사사례 검토

○ 공공의 공간 이용시 소관 조례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한강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입장권 발매행사는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를 이용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입장권 수입 이외에 1m^2당 30~40원의 점용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음.

○ 또한 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는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 체육경기는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일반행사는 100분의 15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강이나 체육시설의 경우와 같이 공원에서도 유료 입장권 발매행사에 대해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15%를 이용료로 징수하고

점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서울시의 시설 및 공간의 이용에 있어 형평성에 맞는 조치라 할 수 있음.

○ 다만 공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기별로 각 사업소에서 접수를 받아 '장소사용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사를 허가하는 만큼 이미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행사에 대해서 신규 이용료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 조례 적용 시기를 하반기인 2018년 7월 1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기타

○ 공원의 일시적 장소사용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복되는 날짜의 행사를 선별하거나, 공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하는 절차를 운영 중임.

○ 그러나 각 사업소 별로 일시적 장소사용 기본원칙이 상이하고, 특히 개인 또는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 켐페인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허가자의 의견에 따라 행사의 가부가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정하고,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공원인 문화비축기지는 일시적 공원 이용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와 별도로 접수를 받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가 이원화 되고 있으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서울숲은 민간위탁 관리 중으로 일시적 장소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총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수정안 요지

○ 공원사용심의는 상반기, 하반기로 분리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조례 적용시점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접수가 완료된 행사에 대해 금액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 부칙의 시행일을 2018년 7월 1일로 하도록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69

제안년월일 : 2018년 2월 23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공원사용심의는 상반기, 하반기로 분리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조례 적용시점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접수가 완료된 행사에 대해 이용료가 변동될 수 있어, 시행일을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골자

○ 부칙에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8년 7월 1일로 함.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개정 2017.5.18.>

<table>
<tr><th rowspan="2">공원별</th><th rowspan="2" colspan="2">종 별</th><th rowspan="2">사용기준</th><th colspan="2">금 액(원)</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체육경기</th><th>기타행사</th></tr>
<tr><td rowspan="16">공 통</td><td colspan="2">잔디광장</td><td rowspan="2">1㎡당,
2시간</td><td colspan="2">20~40</td><td rowspan="8">◦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td></tr>
<tr><td colspan="2">일반운동장(광장)</td><td>5~10</td><td>10~20</td></tr>
<tr><td rowspan="2">축구장</td><td>잔디</td><td rowspan="4">1회 2시간</td><td>120,000~
156,000</td><td>300,000~
390,000</td></tr>
<tr><td>인조
잔디</td><td>55,000~
82,500</td><td>110,000~
143,000</td></tr>
<tr><td rowspan="2">풋살
경기장</td><td>10인용</td><td colspan="2">25,000~32,500</td></tr>
<tr><td>6인용</td><td colspan="2">15,000~19,500</td></tr>
<tr><td rowspan="2">테니스장</td><td>실외</td><td>1면당, 2시간당</td><td colspan="2">8,000~16,000</td></tr>
<tr><td>실내</td><td>1면당, 2시간당</td><td colspan="2">25,000~37,500</td></tr>
<tr><td colspan="2">파크골프장</td><td>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td><td colspan="2">4,000~6,000
3,000~4,000
2,000~3,000</td><td>◦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td></tr>
<tr><td colspan="2">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td><td>클럽(1회당, 개당)</td><td colspan="2">1,000~2,000</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야영장</td><td>야영장소 1회당</td><td colspan="2">10,000~30,000</td><td>◦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td></tr>
<tr><td>전기 1회당</td><td colspan="2">3,000~5,000</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야영장 물품대여료</td><td>야영텐트 1회당</td><td colspan="2">5,000~20,000</td><td></td></tr>
<tr><td>1인용매트 1회당</td><td colspan="2">1,000~1,500</td><td></td></tr>
<tr><td colspan="2">사진·영상
촬영녹화</td><td>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td><td colspan="2">13,000~19,500
6,500~13,000</td><td>◦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td></tr>
<tr><td colspan="2">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td><td>1회당 (1일당)</td><td colspan="2">1,000~20,000</td><td></td></tr>
<tr><td colspan="2">강의실 대여료</td><td>100㎡당, 1시간당</td><td colspan="2">20,000~30,000</td><td>◦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td></tr>
<tr><td colspan="2">야외무대</td><td>2시간당</td><td colspan="2">100,000~150,000</td><td></td></tr>
<tr><td colspan="2">청소년 체험의 숲</td><td>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td><td colspan="2">8,000~12,000
5,000~8,000
3,000~5,000</td><td>◦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 키 140cm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2">국궁장</td><td>1일(3시간)</td><td colspan="2">2,000~4,000</td><td rowspan="2">◦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 청소년·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td></tr>
<tr><td>1개월</td><td colspan="2">20,000~40,000</td></tr>
<tr><td colspan="2">입장권
발매행사</td><td>입장권을 발매 하는
유료행사</td><td colspan="2">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td><td>◦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td></tr>
<tr><td>남산
공원</td><td colspan="2">차량통행료</td><td>승합자동차
(16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td><td colspan="2">3,000 ~ 6,000
2,000 ~ 4,000</td><td>◦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td></tr>
<tr><td>서울
대공원</td><td colspan="2">서울대공원
캠핑장</td><td>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td><td colspan="2">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td><td></td></tr>
</ta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	비고
공통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 청소년·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개 정 안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	비고
공통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 청소년·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 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